

영국사례

**자살 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Worksop 지역의 Entwistle 부부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Worksop 「Guardian」이 내부 실천 규범 중 제4조(괴롭힘)와 제5조(슬픔이나 충격에 대한 침해)를 위반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들은 「Guardian」이 사적 공간에 있는 Entwistle 부인을 촬영함으로써 제3조(사생활)와 제10조(도청과 속임)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아들인 Neil Entwistle 씨는 그의 어린 딸과 아내 Rachel 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판결 후 Entwistle 부인의 공식 진술에 대해 「Guardian」은 적대적인 (독자의) 편지를 여러 편 실었으며, 이는 실천 규범에 위반됨은 물론 부부의 슬픔을 무시한 것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Entwistle 부인은 “내 아들은 결백하며, 며느리인 Rachel이 우리 손자를 죽이고 자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에 우리 부부는 망연자실해 있다. 나는 Rachel이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우리 아들은 부인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감옥에 가야한다”고 진술했다.

신청인은 「Guardian」이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독자의 편지를 실은 것은 자신들을 위협하여 진술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또한 기자가 세 번에 걸쳐 그들의 집을 방문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Entwistle 씨의 답변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기자들은 판결이 나던 날 Entwistle 부인이 근무하는 학

교로 찾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몰아세웠으며, Entwistle 부인이 학교에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것은 실천 규범 제3조와 제10조 위반이라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Guardian」은 이에 대해 Entwistle 부인의 진술 후 받았던 독자의 편지 중 대표적인 것을 실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기자는 신청인을 두 번 방문했으나 두 번 다 재판 전이었고 이러한 방문 후 신청인이 「Guardian」에 자신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이후 「Guardian」은 Bassetlaw 지역 의회가 필요한 회의 참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이유로 Entwistle 씨의 의원 자격 박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그에게 한 번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Guardian」은 기자 한 명이 학교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학부모나 학생을 몰아세운 적은 없으며 Entwistle 부인의 사진은 20-25야드 떨어진 거리의 차 안에서 찍은 것으로, 그 당시 신청인은 정문 가까운 도로에 서있었다고 설

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비록 그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기사와 관련된 인물이며, 신문은 사건의 다양한 시각을 보도할 자격이 있고 Entwistle 부인의 진술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라는 이유에서다. 아들이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위원회는 언론사가 이 진술을 기사화하기로 한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기사화하는 것 또한 규범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제4조는 기자의 물리적 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적대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4조에 관련해서 위원회는 「Guardian」이 실친 규범을 준수하면서 신청인에게 접근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판 전 기자가 신청인의 집에서 그들을 취재하려 했지만 위협적으로 대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기자가 직접 Entwistle 부인의 학교에 갔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때 다른 사람들을 취재하려 했던 것은 위원회에 대한 불만 제기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7월 7일 「Guardian」에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Entwistle 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규범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Entwistle 씨의 지역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형식을 갖춰 이메일을 한 장 보냈을 뿐이라는 점에서다. 위원회는 뉴스와 관련된 사람이 취재를 한 번 거부했다고 해서 기자가 다시는 그들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규범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취재 접근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공익이나 사건의 진행 정도에 달려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Entwistle 씨에게 추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결정했다.

한편 동의 없이 사적인 장소에서 개인의 사진을 찍는 것을 금하는 제3조와 관련, 위원회는

Entwistle 부인을 촬영한 것은 사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곳에서 공사 구역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례에서는 사진이 찍혔을 당시 민원인이 학교 구역에 있었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민원인이 사진이 찍혔을 때 길거리로부터 가지적이며 구별이 가능한 곳에 있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원인이 공공 도로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위원회는 사생활의 합리적 기대가 있는 곳에 민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부부를 괴롭힌 결과로 찍은 것이 아니며, 기자가 차에 남아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역시 곧 제10조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결정했다. □

## 호주사례 1

###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Camden Advertiser」에 대해 제기한 Andrew Wannet 씨의 불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Camden Advertiser」가 Camden 지역에 무슬림 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었

고 이에 대해 지역 의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사실에 기반했음을 주목했다.

Wannet 씨는 무슬림 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Camden / Macarthur 주민 모임의 회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의회 결정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공정하게 보도되지 못했고,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청원 관련 기사에서 통계적인 오류가 있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2007년 10월 Quranic Society가 학교 설립을 신청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논란이 된 끝에 지역 의회가 소집됐다. 3천 건이 넘는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탄원서는 물론 연방과 주 정치인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됐다. 「Camden Advertiser」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이에 관해 많은 기사를 썼다.

Wannet 씨는 2008년 2월 6일 1면에 실린, 의회의 결정에 대한 '무슬림의 반응'이라는 기사가 학교 설립 제안에 대한 공익을 대변하는 Quranic Society의 시각은 다뤘음에도 자신이 속한 모임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으며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신문사는 Wannet 씨와 그가 속한 모임의 의견을 포함, 많은 독자의 편지를 이미 다뤘고, Wannet 씨는 신문사 블로그에 여러 이름으로 댓글을 단 적이 있으며, 가명으로 신문사에 독자의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는 무엇이 보도될 가치가 있나 판단하는 것은 편집장의 권한이며 신문사가 받은 모든 편지나 의견을 일일이 보도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의회의 결정 후인 5월 28일, 6월 4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Wannet 씨는 대다수의 청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를 설립하는 데 반대했다는 '분노'라는 제목의 5월 28일자 기사를 문제 삼았다. 6월 4일자 '세계는 우리가 인종주의자라고 생각 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Camden 주민들에 대해 무슬림을 반기지 않는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문 기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독자의 편지가 6월 4일자에 보도됐다. 독자 편지가 문제 삼은 내용은 '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이 청원의 99 퍼센트를 대표 한다', '몇 몇 계획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지만, 대다수는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 설립을 반대했다'고 보도한 것이었다.

Wannet 씨는 청원한 다수는 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반대한 것이며, 이는 지역 의회 공무원들의

요약본에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평의회는 Camden 의회 공무원들이 청원의 반대 이유를 종교, 계획 내용,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판단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dvertiser」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몇몇 두드러지는 여론을 선택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여러 논란의 목소리를 하나의 주제로만 한정시켰다고 비난받을 수 있으며, 이 사례에서도 '99 퍼센트'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과장된 한 번의 표현 때문에 논란에 대한 보도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신문사가 매우 논란이 심했던 주제에 관해 모두에게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

## 호주사례 2

### 언론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릴 의무와 그 문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할 권리를 갖는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Queensland Country Life」의 5월 1일자 기사에 대한 호주육우협회 (ABA) 회원

John Carter 씨의 불만제기를 받아 들었다.

문제된 기사는 ABA가 호주경

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식료품 가격에 대한 조사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ABA는 의견서는 '호주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에 비해 슈퍼마켓에서 소고기를 살 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미국 농무부 출처의 자료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기사는 '명목 수치는 미 농림부 수치가 믿을만하고 관련된 자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슈퍼마켓 환경에 대한 간단한 조사 내용에서조차 미국 측 수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몇몇 슈퍼마켓 가격에 대한 인터넷 조사 결과와 호주 전역 1백여 곳의 소고기 아울렛에서 조사한 소매 가격도 함께 보도했다.

기사는 또 ABA의 의견서에 대한 반응도 함께 다루면서, ACCC의 위원장인 Graham Samuel 씨가 ABA가 슈퍼마켓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적절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Carter 씨는 조사 기간 중 Samuel 위원장의 발언을 비난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박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Carter 씨의 조직이 미국과 호주 소고기 판매업자들의 세전 총 수익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신문사나 신청인 양쪽 모두 Samuel 위원장의 발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신문사는 인터넷에서 인용한 통계 자료가 적절하며, 다른 자료는 호주 축산업 조사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arter 씨는 기사에서 소고기 생산자인 David Byard 씨를 ABA의 이사로 소개하며 그의 발언을 인용했으나, 실제 그는 ABA의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신문사가 이 부분을 정정하긴 했지만, 신청인은 Byard 씨의 발언을 기사에 담은 것은 ABA를 부정적으로

로 인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언론사가 논란이 있는 통계를 보도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통계의 출처를 확실히 밝혀서 그 진실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신문사가 ABA를 비판함에 있어 최소한의 적절한 통계적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 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인다고 최종 결정했다. □

뉴질랜드 사례

**관련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할 경우,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좀더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Wai-mea Weekly」가 2008년 7월 2일 보도한 기사에 대해 Penny Griffith 씨가 제기한 불만을 기각했다.

Penny Griffith 씨는 Richmond 지역 공연 예술 센터를 위한 Tasman 지역 의회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센터 계획은 세기의 협상'이라는 기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기사는 그녀를 '테러리스트 무리' 중 하나로 묘사했다.

기사는 센터의 설립 주체인

Grace 교회가 기금 조성 철회 요청을 한 것은 프로젝트에 대해 소규모 납세자 그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실망한 프로젝트의 찬성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회의 참여가 불발된 것은 "기회를 잃은 것이며 '테러리스트 무리'에 의해 이는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Griffith 씨는 사실과 의견 그리고 진술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는 신문평의회 제6원칙을 기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가 기금 조성을 반대

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기사에서 인용된 것들은 출처가 없다고 말했다. Richard Kempthorne 시장이 했다는 진술은 '약 여섯 명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Nelson Mail」에 투고했으며, 반대자들은 Richmond 지역 포럼과 의회 회의 등을 포함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지출을 문제삼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회가 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하도록 한 것이 그 사람들이라는 암시를 준다.

Griffith 씨는 기사가 밝혀지지 않은 출처를 인용,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를 밀어붙인 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천박하게 일컫는 기사를 지역 신문이 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비판 하면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국제 안보 속에서 그러한 용어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Griffith 씨는 그가 기금 조성 제안에 반대하는 주요 투고자, 발인자, 혹은 공식 청원자 중 하나로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또 그를 묘사하면서 '테러리스트'라는 용어를 쓴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며, 품위가 떨어지고, 잠재적으로 자신의 안전 상태와 자유롭게 여행할 능력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신문사에 편지를 보내서 그러한 발언을 철회할 것과 1면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편지는 2008년 7월 16일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별 다른 언급 없이 신문에 실렸다. 7월 9일 한 차례 더 사과를 요구했으나 다른 반응이 없자, 그는 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불만을 제기했다.

신문사의 편집자는 두 가지 불만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신문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발언과 관련해 Griffith 씨의 이름을 함께 엮어 실지 않았으며, 또한 그와 다른 민원인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았고 반박했다. 테러리스트 언급은 논란이 된 양측에서 지역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 후 '상황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거론된 의미라고 해명했다. 편집자는 Grace 교회가 의회에 대한 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한 이유는 "심한 부정과 협박" 때문이라며,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느낀 절망감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찬반 양측은 기사가 발행되기 전 각각 의견

을 개선할 기회를 얻었으며, 반대측에서는 단지 한 사람만이 취재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양측에서 격렬한 논의와 감정이 촉발된 지역의 문제다. 양측은 교회가 기금 조성 신청을 철회한 것이 Tasman 지역 의회의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지역 신문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다룰 의무를 가진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는 왜 교회가 기금 조성 요구를 철회했는가 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신문사가 소위 '패배자'의 반응을 취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는 실망했던 기금 조성 찬성자 중 익명의 한 사람이 발언한 것이다.

기사는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편집자 칼럼에 대한 편지나 뉴스 기사를 계속 읽어왔던 독자라면 그 모임 회원의 이름을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Griffith 씨는 그가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신문사의 주장에 대해, "테러리스트" 수준으로 그와 연합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기사에 대해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테러리스트 무리"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임을 인정했지만 이 논란과 관련

된 다른 표현들과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표현은 지역 기금에 대한 싸움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그 기사를 읽은 어떤 사람도 이 발언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사의 첫 번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술만 담은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테러리스트가 Richmond에 공연 센터가 들어선다는 희망을 갖아갔다”는 맥락을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테러리스트 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해외여행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위원회는 논의를 촉진시키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이 신문사의 의무임을 믿는다고 설명하면서 위원회의 원칙들 중,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불만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